2022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2년 6월 22일(수)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17호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2 년 6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핵심 점검사항, 그리고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 체계, 목차 등을 유지하되, 최근 대내외여건 변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부문 잠재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소득별 또는 순자산 순위별로 구분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취약성을 점검하였음. 또한 암호자산이나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동향과 같은 새로운 금융안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외 규제 관련 논의도 추가하였음. 현안 분석과 참고박스에서는 미연준 정책금리 인상의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연계에 따른 가계의 부실위험 등을 점검하였음. 또한 민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상황에 대해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현황,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음. 아울러 탄소중립 추진 및 암호자산시장 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았음.

다음으로 6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대외 리스크 점증,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기후변화·암호자산 관련 리스크 등 최근 부각되는 금융안정 이슈들을 균형있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의 대출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지, 어떤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더 나은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와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때 최근 규모가 커진 기업공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서도 기업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 내었음.

다른 위원은 일부 업종의 기업대출을 보면 증가율뿐만 아니라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전월세시장에서 가격 오름세는 둔화된 반면 거래량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시장 가격과 거래량 지표의 움직 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기업신용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데이 터 제약 등으로 생산성 측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다른 위원은 기업신용의 경우 금융 기관의 자금공급 측면 이외에 기업의 자금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글로벌 리스크 증대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각 요인 이 어느 신흥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이나 계량분석 모형, 시나리오 설정의 전제치, 분석범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안) (생략)

<의안 제19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 제2항, 제28조 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금통위가 2020년 7월 17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및 2021년 6월 30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에 따라 동 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의 만기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하여 만기를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6월 1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SPV는 매입한 회사채·CP에 대해 만기까지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었으며, 금통위는 SPV에 대한 대출조건 의결시 SPV 매입증권 만기및 SPV 존속기간 등을 의결문 참고사항에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당행이 SPV에 기실시한 제1회 및 제2회 대출은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보고하였음.

이에 모든 위원들은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연장)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향후 제2회 대출금의 재대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생략)